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076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웅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942,729원과 그 중 20,142,817원에 대하여 2021. 3. 29.부터 2021. 6.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하여 2020. 8.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20. 8. 25. 접수 제1698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6. 피고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21. 5. 4.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에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B은 2020. 8. 24. 아들인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의 7/9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0.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16983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A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1. 3.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42,8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799,912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20,942,729원(= 대위변제금 20,142,817원 + 가지급금 799,912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0,142,817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21.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6.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277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20. 8. 24. 당시에는 비록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인 2020. 5. 6. 이미 위 구상금 채권의 성립 기초가 된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시점 당시 이미 피고 A가 다수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불과 7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3. 29.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실제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A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B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

별지